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 ▶ COVER STORY: AEO 사후관리의 의미와 그 중요성 1
- ▶ FTA NEWS: 한-미 FTA의 주요 이슈사항 .2
- ▶ VOICES FROM THE FIELDS: 2012 년 중국 해관 주요 관세행정 3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4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5
- ▶ WHERE IS GRACE CHANG?: EMPTY WORDS! 6
- ▶ ABOUT WRITERS 6

AEO 사후관리의 의미와 그 중요성

'09.4 월 정식으로 AEO 제도를 시행한 후 약 210 개 업체가 AEO 공인을 획득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인 획득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반면, 사후관리의 중요성은 간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AEO 사후관리의 의미 및 그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AEO 제도의 의의

AEO 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의미한다.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한다.

2. AEO 사후 관리

1) 의의

사후관리란 AEO 공인을 받은 업체가 공인 이후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인 후 갱신기간까지 각종 변동사항의 보고, 자체 정기점검 실시, 종합심사 실시 등의 사후 행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공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3 년으로, 이 기간 이후에도 AEO 공인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업체는 AEO 공인을 갱신하여야 한다.

2) 변동사항 보고

양도 양수 등 법적 지위, 대표자 및 수출입 관리책임자, 소재지, 사업장 증설 등 일정 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이를 보고 해야 한다.

3) 자체평가

공인 후 매년 1 회 공인 기준에 대한 관리 현황을

자체 평가하고 자체 평가서를 작성 후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자체 평가서는 수출입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관세사 등에 심사의뢰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4) 종합심사

①의의

관세청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 기준의 이행 실태에 대하여 공인 후 2 년이 경과한 때부터 유효기간 만료 6 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실시하며, 심사 방법은 서류에 의한 심사와 실지 방문 심사가 있다.

②긍정적 효과

관세청의 종합 심사 후 해당 업체는 부여 받은 법규 준수도에 따라 공인등급의 상향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등급이 상향 되는 경우 일정 특혜를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다.

* AEO 공인 등급은 "A", "AA", "AAA"로 구분된다.

③부정적 효과

종합심사를 통하여 법규준수도가 하락 되는 경우 공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종합심사 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 후 심사에 임해야 한다.

3. 사후관리의 중요성

AEO 공인을 획득하는 경우 " 과태료 경감, 외국환 검사 제외, 서류제출 및 검사 대상 선별 제외" 등 수많은 혜택을 공인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선의 확보와 선점에서 매우 유리한 이점이 있다.

그런데 공인을 획득하기만 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인이 취소된다면, 앞서 말한 혜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래선도 떨어져 나갈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AEO 공인 취득 못지않게 사후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공인 후 효과적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AEO 컨설턴트, 즉 AEO 전문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배 성 재
sjbea@customsservice.co.kr

한-미 FTA의 주요 이슈사항

2012년 3월 15일, 최근 몇 년간 HOT ISSUE였던 한-미 FTA가 우여곡절 끝에 발효되었다. 대외경제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한-미 FTA의 경제성 효과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는 ① GDP: 5.66%증가, ②후생수준: 321,9억 달러 증가, ③고용: 35만 명 증가, ④무역수지: 27.2억 달러 흑자확대(향후 15년간 연평균)의 거시적인 경제성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미 FTA를 통하여 수출입기업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경제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미국과 거래를 하는 수출입기업의 수출증대 및 관세절감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마다 한-미 FTA의 내용 및 활용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한-미 FTA의 내용 및 활용방법 중에서도 주요한 이슈 몇 가지를 선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한-미 FTA의 적용 영역은?

- 대한민국: KR(원산지부호)
- 미합중국

① 미국 50개주, 콜롬비아 특별구 (워싱턴 D.C) US(원산지부호)

②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PR(원산지부호)
 ※ 미합중국에서 관, 사이판 등 그 밖에 미국의 자치령은 협정적용 대상이 아니다.

2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주체는?

발급 주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자율발급 상품의 수출자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자와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이 원산지 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의 양식은?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8가지 필수 기재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다. 그러나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8가지 필수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 송품장 등 상업 서류에 기재하여도 되고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도 적용이 가능하다.

※ 원산지증명서 8가지 필수 기재 항목

[협정문 제 6.12 조 2항]

-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⑤ 상품의 HS 품목번호 및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자
-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 한-미 FTA 특별법의 권고서식

그러나 FTA 특별법에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권고서식²을 첨부하고

있다. 따라서 필수기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권고서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추천한다.

•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요건 사진 확인 제도

수입자는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이 맞는지 수입신고 전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협정에서 정한 8가지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있는지의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며, 원산지결정 부합여부 등 실체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4 원산지증명이 면제되는 경우는?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 면제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을 면제한다. 따라서 수입 시 구매 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한 후 협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협정세율의 적용신청 시 ①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②수입물품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로서 활용된 것이 적발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 가능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4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기: 제한 없음
 ① 수입: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도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② 수출: 선적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 선적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하여도 유효하다. 다만,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한다.

예)선적일: 2012년 1월 1일
 원산지증명서 작성일: 2012년 1월 15일 -> 유효

6.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



수입 당시 원산지 상품이었는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신청을 하면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FTA의 경우에는 수리 후 협정세율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 FTA와 한-페루 FTA에서는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제출 가능하다. 다만, 사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본대조필 서명이 있어야 한다.

※ 원본대조필 서명(FTA 특례고시 별표)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 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서명

7. 원산지증명서의 HS 품목번호와 수입 신고서의 HS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 원산지증명서: HS 2002 버전
 • 수입신고서: HS 2012 버전
 한-미 FTA는 HS 2002를 기준으로 협상이 타결되어 원산지 증명서 상에는 HS 2002 기준의 세번을 요구한다. 그런데 2012년 1월 1일부터 HS 2012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수입신고서 상에는 HS 2012 기준의 세번이 기재된다. 이렇게 원산지 증명서와 수입신고서 상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 신고서의 품목번호(HS 2012)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 HS2012 기준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양국 세관 당국간에 협의 중에 있으며, 그 전에는 임시로 연계표(HS2012 ↔ HS2002)³ 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출자가 미국의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HS 2002 버전과 HS 2012 버전의 세번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미 FTA 의 경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않아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한-미 FTA 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기업의 정확한 원산지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협정의 원산지 증명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한미 FTA 의 검증방식은 일반물품에 대해서는 직접검증 방식, 섬유 의류에 대해서는 간접검증과 공동 현지검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 검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근거서류를 철저히 보관하는 등 협정 관세 적용의 모든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혜지

hjchoi@customsservice.co.kr

¹ 외교통상부 FTA 포털

² FTA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 6 호의 9 서식

³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시행과)에서 시달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 특집! 기획 연재 시리즈] ⑩

2012 년도 중국 해관 주요 관세행정 추진방향

금년 초인 1 월 12 일부터 양일간 중국 전국해관 해관장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는 2012 년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실적과 금년 한해 추진할 해관정책의 방향과 내용 등 업무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언급한 해관총서장의 훈시내용 등을 토대로 금년 중국해관이 추진하게 될 주요 관세행정 관련정책과 내용을 살펴본다.

총서장 위광저우(于廣洲)는 이 자리에서 전국에서 모인 해관장들에게 오늘날 무역형태의 복잡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안정 속 발전(점진적 개혁개방)을 관세행정의 모토로 삼아 감시감독과 서비스의 개선, 각 분야의 지속적인 업무혁신 및 관세국경 관리능력의 부단한 제고를 요구하였다. 또한 그중에서도 특히 “관세국경 관리업무(이하 ‘관문관리’라 칭함)”를 해관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임을 지적하면서, “적법성과 편리성”을 실현은 물론 경제발전 형태에 따라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외부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수출기업의 주문량이 감소하고, 원가가 오르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대외무역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감시감독과 서비스의 개선이 해관의 기본 책무이며, 또한 정부가 해관에 요구하는 것임을 상기하고 복잡한 대외무역 환경에 잘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관문관리, 서비스관리, 위험관리, 조직관리**”가 해관업무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관문관리**”는 해관의 임무이자 존재이유이며, “**서비스관리**”는 해관의 과학적 발전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필수 요구사항이고, “**위험관리**”는 해관 업무를 관리하는 실질적 요구사항이며, “**조직관리**”는 해관이 발전하기 위한 조직방면에서의 책임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 같은 해관의 기본 4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도 “**관문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해관업무 중 가장 기본적이고도 제일 중요한 임무인 관문관리를 함께 있어 전국해관장은 반드시 사명감과 책임감을 명심하고 국가관문을 잘 수호하고 관리하며 통관을 신속히 지원하는 등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해관의 통계분석과 수출입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경보체제를 강화하고, 경제지표 추세의 예측과 대외무역정책 집행 및 대외 수요변동 상황의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 분석의 예측성, 법적근거의 합법성, 민의전달의 편리성’ 등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동시에 업무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감으로써, 전면적인 상품분류 공개와 통관분야 혁신 및 전자 신고(P/L: Paper less) 혁신을 가동할 것을 당부하였다. 중소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공무역기업의 내수 진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절차의 간소화와 규범화를 적극 추진하며, 해관정책을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국가적 지역 발전 전략을 달성함과 동시에 해관의 특수 분야에 대한 감시관리 역량도 집중하여 개선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해관과 검사, 검역당국 등 기타 관세국경 관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총서와 각 성, 총서와 각부서간 MOU 도 적극 체결해 나가자고 하였다.

위 총서장은 “통관시스템 현대화 (이하 ‘금관공정’이라 칭함)”에 대해서도 2 단계 건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자고 지적하였다. 수출입기업 중 성실업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중요 항목으로



하여 새로운 형태로 응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또한公安과 은행 등 기관·단체와 연계망을 구축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전국적인 신용보증 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외에도 WCO 에서의 관세정책상 주요결정과 국제적 다원화 무역체제규정의 제정 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회담 상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하는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관세 협력분야”에 있어서도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사무관 임창환

chron21@customs.go.kr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2. 개정내용

△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유대품의 면세한도 신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면제 한도를 술·담배·향수를 제외한 휴대품의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 달러 이하로 하고, 술의 경우에는 1 병으로 하되 1 리터 이하이고 미화 400 달러 이하인 것으로 함.

△ 가산세 면제 범위 조정

-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 세액 부족 시, 10% 가산세는 면제하되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세는 징수.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 시 신청 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하여부족세액은 징수하되 가산세는 면제.

△ 제 9 조의 2(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 56 조제 2 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 천분의 40 을 말함.

3. 시행시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

다만, 제 9 조의 2 의 개정규정(환급가산금 이율)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라 농어민의 영농활동 지원.

2. 개정내용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 농업기계의 범위를 농업용 로더의 경우 2 톤 미만에서 4 톤 미만으로 확대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 1 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화식(火食)사료용 사료배합기를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새로 추가.

3. 시행시기

이 규칙은 3 월 15 일부터 시행.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개정.

2. 개정내용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 부터 5113 까지, 5204 부터 5212 까지, 5307 부터 5308 까지, 5310 부터 5311 까지, 5401 부터 5402 까지, 5403.20, 5403.33 부터 5403.39 까지,



5403.42 부터 5408 까지, 5508 부터 5516 까지 및 6001 부터 6006 까지의 것은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함.

1.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2. 보이는 안감이 제 61 류의 주 1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

3. 시행시기

이 규칙은 3 월 15 일부터 시행.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선 경
sklee@customsservice.co.kr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㉞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EDITORIAL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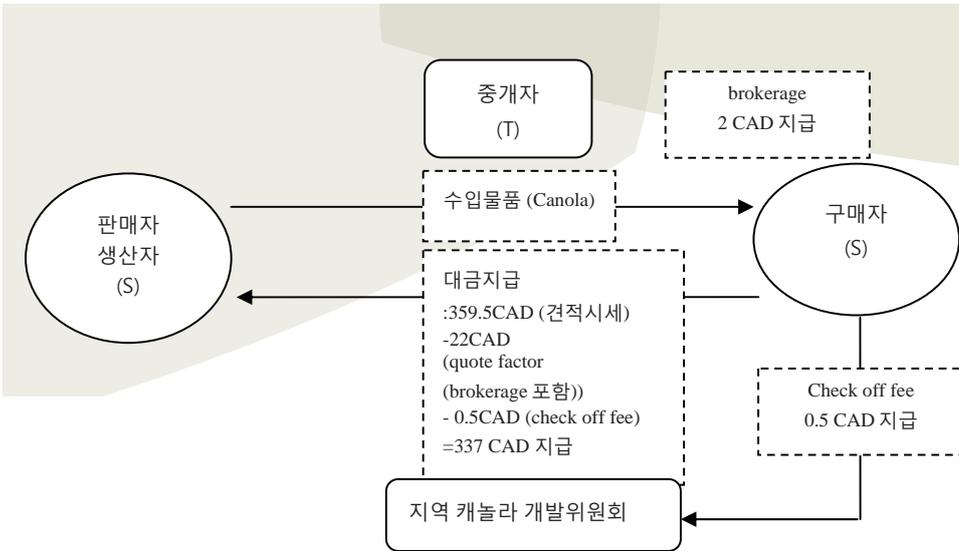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 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중개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HQ 548258 '03.10.09.)

중개료(brokerage)란 거래당사자(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독립적인 중개인이 양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를 주선하고 쌍방으로부터 받는 거래 주선료를 말한다.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중개료는 법정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산해야 한다.

다만, 연방순회법원은 Generra Sportswear 대 미합중국 사건(1990) 판결에서 quota payments 를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결정하면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금액 (additional charge)이 법정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판시한 바 있다.

본 사안에서 판매가격은 캐놀라 종자의 가격과 중개료, check-off fee 로 구성되며, 그 금액의 합계가 수입물품을 위해 지급한 총 금액이 된다. 여기서 판매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수입자 측은 캐놀라 종자 수입과 관련한 중개료는 구매수수료이기 때문에 거래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연방순회합소법원은 Moss Manufacturing Co, Inc. 대 미합중국 사건(1990)에서 구매수수료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관이 그것을 공제할 권한이 없음을 판시하였다.

따라서 A 가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한 중개료가 설사 구매수수료라 할지라도 제출된 자료를 통해 중개료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 이상 세관은 그것을 공제할 권한이 없다. 뿐만 아니라 중개인의 공개된 경영이념, 당사자 간 계약 등 증거를 통하여 보건대 쟁점 중개료가 구매수수료라는 A 의 주장이 옳지도 않다.

□ 결정(Holding)

쟁점 중개료는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이므로 거래가격에 포함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식사향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 거래사실(Facts)

미국 구매자 A 는 캐나다 판매자 S 로부터 캐놀라(유채꽃) 종자를 구매하면서 전문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다. 중개인이 적절한 판매자를 물색하여 A 에게 연결해주면 그 이후는 A 와 S 가 직접 거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중개인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중개인은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이지 거래 조건 조건을 결정하는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

구매자 측에서 제시한 거래 사례에서 나타난 가격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A 가 특정 시점의 선물가격(先物價格)에 기초한 견적가격 (quote price)을 MT 당 359.5CAD 로 확인하면, 이 견적가격에서 0.5 CAD 를 check-off fee 명목으로 공제하는 한편, 중개인이 거래에 개입된 경우에는 MT 당 22 CAD 를, 중개인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MT 당 20 CAD 를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MT 당 공제금액 22 CAD 와 20 CAD 사이의 차이 2 CAD 는 중개료이고 20 CAD 는 "quote factor"로서 일종의 할인에 해당한다.

check-off fee 는 지역캐놀라개발위원회 (Canadian provincial Canola Development Commissions)에 납부하는 수수료이다.

쟁점거래의 경우, 중개인이 판매자를 물색 하였으므로 견적가격에서 MT 당 22 CAD 공제될 것임을 거래 당사자 모두가 "양해(understood)" 하였다.

아울러, A 가 모든 check-off fee 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최종/순판매가격 (final/net sale price)"은 동 check-off fee 도 추가로 공제한 잔액 337 CAD 임에 대하여도 "양해"하였다.

구매자는 계약 확인서에서 당해 물품을 MT 당

337.5 CAD 에 구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당해 물품의 송장에는 중개료 2.0 CAD 를 포함한 quote factor 22.0 CAD 가 명기되어있고 비고란에는 동 금액이 판매자 계정에 속하는 "broker/check off tax/canola levy"임이 설명되어 있다.

당해 물품 구매와 관련한 구매자의 지급명세는 다음과 같다. 견적가격 359.5 CAD 에서 quote factor 20 CAD 를 공제한 잔액 중 337 CAD 는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brokerage 2 CAD 는 중개자에게, check-off fee 0.5 CAD 는 지역캐놀라개발위원회에 직접 납부한다.

□ 쟁점(Issue)

중개수수료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인지 여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수입물품에 대한 최우선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은 관세법(19 U.S.C) §1401a 규정의 거래가격방법이다. 동 규정은 거래가격에 대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생산자원을 포함한 법정 가산금액을 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b)(1)

또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대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b)(4)

법정가산요소는 중개료 및 수수료 (구매수수료 제외),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금액이

WHERE IS GRACE CHANG?

Empty Words!



장승희 대표 관세사

벚꽃은 아직 피지도 아니하였는데 때아닌 선거공약만 난분분하고 있습니다.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불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이 국회의원만의 전유물 인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빈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모든 말들에 의미를 두고 commitment 를 행하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 어수룩한 사람,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폄하되기도 합니다.

“하는 말 하나도 빈말이란 게 없는 신기한 사람...”이 있다 합니다. 돈을 잘 번다는, 시간에도 쫓긴다는 차인표라는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만나는 사람의 직업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진심을 다해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 분의 많은 봉사, 기부 못지않게 훌륭해 보이는 닦고 싶은 모습입니다.

고객들께 책임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속이 빈 강경 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물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미 FTA 가 드디어 발효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FTA 는 협정세율의 적용으로 관세액이 감소하거나 없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은 언제나 책임을 동반합니다. 관세액 절감을 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을 지키시는 것은 고객사의 책임입니다.

210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관세청의 AEO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과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를 맺고 수출입통관 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도 혜택에 따른 책임이 동반됩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로 의사소통이 활발한 세상입니다. 수많은 말들이 전파를 타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무게 없는 헛된 empty words 는 날려 보내고 따뜻한 마음, 진솔한 생각, 깊이 있는 말들로 채워지는 사회를 그려봅시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ABOUT WRITERS

Cover Story-

AEO 사후관리의 의미와 그 중요성



배성재 관세사 (sjbea@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통관 2 팀
- 한국 IBM 전담 관세사
- IT 전파인증 전문 컨설턴트

FTA News-

한-미 FTA 의 주요 이슈사항



최혜지 관세사 (hj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기획연재시리즈@



임창환 경영학박사, 관세사 (chron21@customs.go.kr)

PROFILE

- 現)관세청 심사정책국
- 現)중국관세무역연구회 간사장
- 前)부산국제우편세관장
- 前)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 초빙학자 파견
- 前)배재대학교 무역학과
- 겸임교수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이선경 관세사 (jsk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US Rulings 연재③

증개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신성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



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

통관 43 호 | 발행일 2012 년 3 월 15 일 | 발행인 장승희 | 편집인 김연서
발행처 신한관세법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6-4
Tel 02-542-1181 Fax 02-544-9705 간별 월간